10.18219/ddmh..112.202012.409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 계층성과 혈연성의 관점에서

孫炳圭**

Ⅰ. 머리말
Ⅱ. 제적부와 토지대장 자료; 1910년대 단계리의 사회구조
Ⅲ.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양상과 성격
Ⅳ. 맺음말

• 국문초록

1910년대 식민지 戶籍의 주소 양식은 戶의 순번에서 垈地의 지번으로 변화한다. 일부 호구만 선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주소로 모든 주민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개개인의 '出身'을 本籍地라는 지리적 연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혈연적 연원에서 파악하는 호적 등재방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빈번한 거주이동은 소위 '동성촌락'이라는 혈연적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거주이동은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족들 가운데 높은 비율로 일어났다. 거주의 불안정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들은 주로 여러 군소 성씨들이지만,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할 정도로 同姓이라는 혈연적 연대가 강고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넓은 대지를 소유하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거주이동이 발생했다.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갖추어도 정착하지 않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군소 성씨의 가족 가운데 나타난다. 다수파 성씨인 경우는 世居地에 근거를 두고 도시에서 활동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AKSR2018-RC01).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하려는 가족인 반면, 이들 군소 성씨의 거주이동은 다수파 성씨들의 배타성이 그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동성촌락’에는 다수파 성씨 가족들이 부계혈연적인 결집을 강조하며 마을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민의 계층성과 혈연성의 역학관계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주제어 : 식민지호적, 농촌가족, 거주이동, 동성촌락, 계층, 혈연

Ⅰ. 머리말

18~19세기에 걸친 일련의 호적대장에서 농촌지역 가족들이 출신지를 넘어 다른 행정면리로 호구를 이동하는 상황이 추적된 바 있다.[1] 호적에 호구가 등재된다는 것은 지역단위 부세부담의 총액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함을 말한다. 그런데 행정면리를 넘는 호구 이동이 매우 빈번하다는 사실은 행정면리를 단위로 하는 주민의 공동체적 부세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 빈번한 거주이동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인 결성과 지속적인 단합을 어렵게 한다. 오히려 세거지를 근거로 하는 '친족네트워크'의 강한 유대관계가 요구된다.[3] 한두 성씨의 부계친족이 지역주민의 다수를 점하며 지역공동체의 사회활동을 주도한다는 소위 '동성촌락'의 강고한 결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4]

---

1)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 검토-戶의 移居와 혈연결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227~268면; 김건태,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 『大東文化硏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71~208면.

2) 송양섭,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한국역사연구회, 2019, 237~274면; 김건태,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세량의 관계」, 『韓國史論』 65,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2019, 185~226면; 「광무양전의 토지파악 방식과 그 의미」, 『大東文化硏究』 84, 대동문화연구원, 2013, 287-346면.

3) 손병규, 「조선후기 거주이동과 혈연적 연대의 관계-단성지역 합천이씨 가계들의 호적과 족보 분석을 통해」, 『韓國史學報』 79, 고려사학회, 2020, 191~224면; 「戶籍과 族譜의 자료적 특성과 연구방법-17C~20C 초 丹城地域 培養洞 陜川李氏들을 추적하며」, 『大東文化硏究』 102, 2018, 41~80면.

4) '동성촌락'에 대한 개념규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제초에 젠쇼에스케는 '同族部落'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대표적인 마을을 지정한 바 있다(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조선총독부, 1933, 459~516면; 崔允棒, 「1930년대 朝鮮의 同族部落과 同族集團; 丹城地域 同族部落의 形成過程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鄕村社會의 단면」, 『전라문화논총』 5,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2, 93~140면). 그런데 조사를 거듭하면서 '동족부락'의 수를 대폭 증가시킴과 동시에 그 개념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권내현,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1~35면). '동족'이라는 용어는 종족집단의 일반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며, '부락'이라는 용어는 일본 지역공동체간의 차별적인 인식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시로 '동성촌락'이라 칭하기로 하지만, 그 실체적 양상과 형성 시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요구된다. 그 일반적인 형성 시기를 19세기 말~20세기 전반으로 늦추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관점이 제시되기도 한다(손병규, 「20세기 초 한국의 族譜 편찬과 '同族集團' 구상-경상도 丹城地域 安東權氏 몇 가계의 사례」, 『大東文化硏究』 91, 대동문화연구원, 2015, 65~92면; 김건태,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대동문화연구원, 2009,

본고는 그 시기에 이어서 20세기 전반에 유명한 '동성촌락'으로 거론되는 농촌지역의 가족단위 거주이동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5) 이 시기 거주이동은 1909년부터 '民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식민지호적'에서 추적될 것이다. 식민지시기 개별 호적은 현행 호적 장부에서 1910년 이후 제적된 호적을 모아놓은 '除籍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적부'란 호주의 변동사항, 즉 사망이나 移居, 양자, 혼인으로 인한 轉籍이 발생하여 호적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재구성할 때, 기존의 호적을 除籍시켜 별도의 장부로 모아두는 것을 말한다.6) 호 자체가 타지역으로 전적하여 제적될 경우에는 현거주지와 함께 이주지 주소를 병기하게 되므로 이동의 시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7)

1910년 전후의 식민지호적 작성 초기에는 호마다 '兩班' '農' '商人'등의 신분이 기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논문에서 거주이동하는 가족의 '계층성'이라 함은 이와 달리 垈地의 소유 여부와 규모를 근거로 하는 경제적 위상을 말한다. 보다 정확한 경제적 위상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대지만이 아니라 전답의 소유규모도 확인해야 하

7~36면).

5) 식민지호적에 대한 분석은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이택,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집성촌의 추이와 인구동학」, 『대동문화연구』 102, 동문화연구원, 2018, 379~408면; 「20세기 언양지역의 가족구성의 변천-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대동문화연구』 83, 대동문화연구원, 2013, 347~386면; 박희진, 「日帝下 彦陽地域 寄留家口의 分居-居住登錄簿의 分析」, 『古文書硏究』 34, 한국고문서학회, 2009, 61~82면; 손병규, 「식민지시대의 호구조사와 민의 대응, 그 전통성의 관점에서」, 『사림』 40, 수선사학회, 2011, 23~49면; 「식민지시대 除籍簿의 인구정보-경상도 산청군 신등면 제적부의 자료적 성격」, 『사림』 30, 수선사학회, 2008, 173~200면.

6) 주민에 대한 호구조사가 '民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여 1923년의 '戸籍令' 발령에 이르기까지, 식민지호적은 일본 明治戸籍에 준한 '本籍地主義' 호적을 갖추어갔다. 分家를 했어도 본적지 부모의 호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그러한 사례는 분석에 크게 방해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식민지호적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손병규, 「한말ㆍ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光武戸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대동문화연구원, 2006, 1~39면; 「민적법의 '호' 규정과 변화-日本의 明治戸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대동문화연구』 57, 대동문화연구원, 2007, 81~115면 참조.

7) 다만, 제적부 분석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20세기 전반에 제적된 호적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자료상 결락되거나 제적되지 않은 호적이 있어 제적부에는 당시 거주하던 모든 호를 찾을 수는 없다. 또한 식민지호적의 관리는 면단위로 이루어져서 면내 이동하는 경우에 주소를 고쳐서 써넣을 뿐, 호적 자체를 제적시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면내 거주이동의 기록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석되었다.

나 여기서는 거주 관계에 집중하여 대지의 분석에 그친다. 거주의 계층성을 대변하는 대지 소유 여부와 규모는 1910년대 식민지 당국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 작성된 '土地臺帳'에서 확인된다.[8] 토지대장에는 1913~4년에 査定되기 시작한 토지 필지마다 田, 畓, 垈地, 林地 등의 지목과 地積, 소유자명과 이후의 소유권 이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와 함께 개별호의 거주상황과 마을의 집락 구도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의 대지를 지적도에서 일일이 대조했다.[9]

분석지역은 행정구역상 慶尙道 山淸郡 新等面 丹溪里를 대상으로 한다. '丹溪里'는 1914년경 '郡面里統廢合'이 이루어질 때 형성된 행정리이며 토지조사를 위한 최하위 구역단위이기도 하다. 호적상 주소와 토지대장상의 지번이 이 행정리 범위로 일원화 되었다.[10] 이 지역은 조선후기에 丹城縣 新等面에 上中下로 나뉘어져 있던 단계, 杜谷, 그리고 都山面에 속한 碧溪의 일부가 포함된다. 이 '단계'는 식민지 당국이 '同族部落'을 파악하기 시작할 때에 단성지역에 지목된 두 '동족부락'의 하나이다.[11] '단계리'는 안동권씨와 순천박씨의 오래된 '世居地'인 '단계' 본촌을 중심으로 주변의 몇 개 마을을 포함하는 셈이다.

또한 '혈연성'은 각 호의 개별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동성촌락' 개념 설정에 맞추어 동성동본 성씨의 광범위한 계보 관계를 포괄하여 관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계층성' '혈연성'은 비교분석을 위한 방편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위상은 20세기에 연속된 19세기적 속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지의 소유자들을 성씨별로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마을, 혹은 몇 개의 마을을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성촌락'을 대상으로 주민의 경제적

---

8) 「산청군 신등면 제적부」, 산청군 신등면사무소. 「慶尙道 山淸郡 新等面 丹溪里 토지대장」, 산청군청. 제적부와 토지대장, 이 두 가지 자료를 교차 분석한 연구는 박희진 · 백승민, 「식민지기 언양지역 延安宋氏 가계의 토지상속」, 『대동문화연구』 9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357~378면; 백승민, 「日帝時代 在村中小地主家의 土地相續-丹溪里 安東權氏 및 順天朴氏의 사례분석」,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논문, 2018 참조.

9) 지적도 「丹城郡新等面丹溪里原圖」(1914년11월15일 측도완성), 국가기록원.

10) 호적대장과 토지대장의 최하위 행정구획이 각각 里와 面으로 불일치했던 것이 1910년대에 里로 일원화된 것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1) 상기의 젠쇼 에스케는 조사 초기에는 단성지역이 동족부락으로 안동권씨와 순천박씨가 주거주자인 신등면 단계와 商山金氏가 주거주자인 구 法物也面의 平地, 두 촌락을 들었다(善生永助, 앞의 책, 459~516면 참조).

위상과 혈연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제적부에서 가족의 거주이동을 추적하고,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실체를 밝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자 함이다.

Ⅱ. 제적부와 토지대장 자료; 1910년대 단계리의 사회구조

1. 제적 호주와 대지 소유의 기록; 몇 가지 사례

제적부와 토지대장에서 가족의 거주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두기로 한다. 이 특정 사례들은 단지 자료상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에 주의할 점을 언급하기 위한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 산청군 신등면 단계 지역은 안동권씨와 진양유씨, 순천박씨의 世居地로 유명하다.[12] 여기서는 안동권씨와 순천박씨 관련 사례를 들어 분석 자료상의 거주이동과 대지소유 관계의 기록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권상태호

제적된 호적의 호주와 토지대장상의 개별 대지 소유와의 관계를 호주의 가족관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權相郃는 단계의 안동권씨 유명 선조인 東溪公 權濤로부터 11대손에 해당한다.[13] 아래 권상태의 가계도에 [ ]는 호적상 주소와 호주 기간, ( )는 토지대장상의 대지 지번과 소유 기간을 표시했다.

<권상태 가계도>
權相郃[75번호 1909~1916년] (대지621 1913~1918년)
- 1남 權金容[621번지 1916~1920년] (대지621 1918~1921년)
    - 1남 權錫龜[621번지 1920~1929년]
- 2남 權一容 (대지558 1915~1919년, 대지703 1914~38년)

12) 백승민, 앞의 2018 논문, 17~31면.

13) 濤-2克斅-3斗興-1嶷亨-4大中-2必忠-계자爓(의형2大人손)-2正立-1仁擇-1相絅(相嶷)/2相郃 (이름 앞의 숫자는 남아의 출생순위를 나타낸다).

- 3남 權禧容 (대지792 1916~1921년)
- 4남 權德鳳[547번지 1917~1944년] (대지547 1918~1924년, 대지848 1931~1935년)
  + 처 鄭希南(대지574, 대지828)
- 1녀 權季賢

1916년도 제적부에 단계리 75番戶 호주 권상태의 사망으로 제적되는 호적이 남아있는데, 1913년에 이미 본동 내로 분가한 차남 삼남 이외에 장남 가족과 미혼인 사남이 기재되어 있었다. 1920년도 제적부에는 장남 權金容이 부친 권상태의 1916년 사망으로 호주를 계승하였다가 1920년에 그도 사망함으로써 제적된 호적이 보인다.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주소가 75번호에서 621번지로 정정되었다. 1929년 제적부에는 권금용의 사망으로 호주를 계승한 장남 權錫龜가 1929년에 陜川郡 嘉會面으로 이거하면서 제적된 호적이 남아있다. 호주를 계승할 당시 권석구의 나이는 11세였다. 또한 1944년도 제적부에는 권상태의 사남인 權德鳳이 맏형 권금석의 호에서 단계 본동 내로 분가하여 호를 세운 이후로 1944년 사망할 때까지의 호적이 남아있다. 권상태의 차남과 삼남의 호는 20세기 전반의 제적부에 등장하지 않는다.

권상태가 거주하던 621번지의 462평 대지는 1913년의 토지 사정으로 권상태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1916년에 사망한 이후 1918년에 장남 권금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921년 11월 2일에 권금용의 장남 권석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것은 같은 날 권금용으로부터 진주에 거주하는 金琪郃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한 기록으로 보인다. 권석구는 1920년부터 합천군으로 이거하는 1929년까지 621번지에 거주하지만 그동안 단계리에서 대지를 소유하지는 못했다. 대지 이외에 그가 1913년 이후로 소유하던 전답도 부친의 사망과 함께 1920년 전후에 모두 처분되었다.

권상태의 차남 權一容은 1913년 분가했는데, 토지대장에는 1914년에 558번지 128평의 대지 소유권을 같은 가계의 친척인 權重卨로부터 이전받았다.[14] 그러나 몇 년 안 되어 1919년에 다시 동리에 거주하는 金彩洛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김채락도 같은 가계의 친척인 權相厚의 사돈이며 權相鎬의 사위이다.[15] 또한 권일용은 단계천 강변의 703번지 29평의 대지도 1914년에 소유하였는데, 이 땅은 1938년에 홍수를

14) 權重卨은 권상태의 6대조인 權嶷亨을 동일 선조로 하는데(안동권씨족보), 제적부에는 1920년에 산청군 거황면으로 이거하면서 제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權相厚는 권상태의 6대조 權嶷亨의 후손이며, 權相鎬도 동계공파 후손이다(안동권씨족보).

막기 위한 제언으로 축조되어 국유지화했다. 권상태의 삼남 權禧容도 분가한 이후 1916년에 792번지 267평의 대지를 순천박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1921년에 일본인에게 처분했다.[16] 1933년 전후로 단계리의 전답 소유권을 792번지 호주 명의로 이전받는 것으로 보아 대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로 단계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권상태의 사남 權德鳳도 형으로부터 1917년에 혼인하여 분가한 이듬해에 거주하는 547번지 189평의 대지를 소유하게 된다. 소유권을 동리의 안동권씨 먼 친족으로부터 이전받았는데, 1924년에 먼 인척이 되는 동리의 李道元에게 다시 이전했다.[17] 또한 848번지의 136평 대지는 1931년에 장인인 鄭秀萬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1935년에 일본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다. 안동권씨 권상태 가족의 대지는 가능한 친인척과 거래를 하려고 한 듯하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권덕봉의 처 鄭希南이 1929년에 부친 鄭秀萬으로부터 568평이나 되는 574번지의 넓은 대지와 284평의 828번지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다. 574번지는 정수만이 1928년에 소유권 이전하여 호주로 거주하는 곳이었다. 828번지 대지는 1923년에 정수만이 진주에 거주하면서 구입했다가 이후 단계로 이주하면서 장녀 정희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8] 정수만은 사위와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대지 이외에도 1927년에 640번지 428평의 대지도 후술할 崔元卿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1925년, 1927년경에는 대지만이 아니라 많은 전답을 대대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 즈음에 진주에서 사돈이 있는 단계로 들어와 정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19] 그런데 제적부에는 정수만이 1921년에 진주에서 이래하였다가 1930년에 함안군 안의면으로 이거하고 그해에 주소를 다시 단계로 옮겼다가 이듬해에 또다시 함안군으로 이거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동래정씨 정수만은 단계에 정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

16) 朴炯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境久登에게 이전시켰다.

17) 權泰馥은 안동권씨 다른 파 權時得의 후손이다. 李道元은 다른 가계 權瀹의 후손인 權相表의 사돈(權宣容의 장인)이다.

18) 이 대지는 1932년에 권상태의 삼남인 權禧容을 비롯한 수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9) 정수만의 자부도 단계에 거주하는 순천박씨 朴海安의 딸이다.

2) 최윤경 · 최원경호

이 지역 첫 번째 제적장부인 1913년도 제적부를 보면,[20] 첫 번째 호는 1906년에 崔寅奎의 사망으로 장남인 崔允卿이 호주가 되었던 호이다. 1913년 당시에 경상도 하동군 청룡리로 "移去됨"으로써, 이 호적이 제적부에 남게 된 것이다. 최윤경은 1904년생으로 세 살에 호주가 되었으며, 열 살로 호가 제적되는 1913년 당시에는 호내에 47세의 할머니—繼祖母인듯—, 48세의 어머니, 13세의 고모, 9세의 여동생이 있었다. 1909년 이후에 '민적'으로 작성된 이 호적의 주소는 "경상남도 단성군 신등면 단계리 11통1호"로 기재되어있다. 光武戶籍까지 이어진 조선시대의 '統-戶' 주소이다.

또한 제적부에는 최윤경의 여동생인 崔元卿의 호가 나타난다. 최원경은 오빠인 위의 최윤경이 '分家'하여 하동군으로 이거함으로써 1913년에 아홉 살의 나이로 호주를 승계했다. 호내에는 어머니 한 분만 등재되어 있다. 위의 최윤경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겨두고 '분가'하여 할머니와 고모와 함께 하동으로 '이거'했음을 알 수 있다.[21] 그런데 단계에 남아있던 최원경호도 오빠 최윤경을 따라 1916년에 하동군 청룡리로 "移居"함으로써 제적부에 남겨졌던 것이다. 1913년에 최원경이 호주를 계승할 당시의 주소는 "丹溪里 147番戶"이다. 인쇄된 '○統○戶'의 주소 기재양식을 무시하고 그 옆에 기재되었다. 또한 최윤경호에 통호주소와 함께 기재되었던 '農'이라는 직업 신분표기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호는 1921년도 제적부에서 세 번째로 다시 발견된다. 조모인 河云文의 사망으로 1920년에 어머니인 朴龍東이 호주가 되어 하동에서 단계리로 "移來"한 것으로 되어있다. 호내에는 호주의 시누이와 '장녀' '崔允卿'이 등재되어 있다. 최윤경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로 기록되어 있는데—장남의 오기인가? 생년월일은 1904년1월10일로 최윤경의 것이 맞다—, 정작 장녀인 최원경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호는 단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듬해인 1921년에 다시 경기도 수원군으로 이거함으로써 제적되어 제적부로 철하게 되었다. 이 호적의 주소는 "단계리 628番地"이다. 628번지는 1913년에 查定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 473坪의 '垈地' 지번이다.

---

20) 1913년 '대정2년'의 『제적부』이다.

21) 최윤경호는 1913년 3월20일에 제적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최원경호가 호주승계한 것은 2월1일로 되어있다. 최윤경호의 제적 신고나 승인이 한 달 이상 늦어진 듯하다.

토지대장에 단계리 628번지의 대지는 1913년 토지사정 당시의 소유자가 '최원경'으로 되어 있다. 최원경이 호주를 승계한 해에 이 대지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것이다. 그런데 1917년에 하동군 청룡리로 소유자의 '주소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때의 소유자는 '최윤경'으로 되어 있다. 이 호는 1913년에 628번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1916년에 하동군으로 이거한 직후에 대지의 소유권을 최원경에서 최윤경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1921년에도 수원군으로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되었는데, 어머니 박용동의 호가 1920년에 단계로 돌아왔다가 다시 수원군으로 이거한 해이다. 이 호의 이래이거는 단계에 628번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1916~1920년 사이의 3~4년 동안과 1921년 이후는 단계리에 대지를 소유하면서 타지에 거주한 셈이다. 대지를 남기고 전답은 1921년에 모두 처분되었다.[22)]

3) 박해용 호

628번지 대지는 1928년에 李萬祚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만조는 602번지에 거주하는 李敦根과 朴性東 부부의 삼남이다. 박성동은 朴海容의 삼녀이며, 최윤경의 어머니인 박용동은 박해용의 장녀이다. 말하자면 최윤경과 이만조는 외할아버지가 같은 이종지간이다. 박성동의 남편 이돈근은 부친 李道亮에게 상속 받은 대지를 비롯하여 이미 단계에 여러 개의 대지-602번지(271평), 601번지(256평 상속), 605번지(104평 상속), 586번지(158평 구매), 596번지(96평 구매), 700번지(343평)-를 소유하고 있었다.[23)] 그의 장남과 차남은 그 대지들의 일부를 상속받는데, 삼남 이만조에게는 마침 박용동과 최윤경 모자가 소유하던 628번지를 소유시켜 거주토록 한 것이다.

이종사촌 사이에 대지의 소유권 이전이 쉽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단계에서 순천박씨 종손으로 박해용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관계가 있다.[24)] 아래 박해용의 가계도에서

---

22) 단계리 두곡의 47번지(791평)/121번지(755평)/210번지(826평)/240번지(508평)의 답, 단계 남부의 333번지(418평)의 전, 단계 중앙부의 627번지(33평) 답, 698번지(179평) 전, 단계 북부의 821번지(282평)/822번지(760평)/825번지(1187평)/826번지(294평) 답에 대해 1921년에 소유권을 일괄 단성면 소남리의 趙渭文에게 이전했다.

23) 李敦根은 부친인 李道亮의 사망으로 1919년에 호주를 승계했는데, 1922년에 단성면 남사리로 이거하여 신등면 단계리의 제적부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593번지 田에 남사리에서 다시 602번지로 주소변경한 기록이 나타난다.

[ ]는 호적상 주소와 호주 기간, ( )는 대지 지번과 소유 기간이다.

<박해용 가계도>
朴海容[629번지 1909~1924년]
- 1남 朴來東[629번지 1924~1940년] (대지629 1913~1939년, 대지793 1913~1939년)
  - 서남 박노○(대지793 1939~1940년)
- 2남 朴碩東(대지629 1966년~)
- 1녀 朴龍東[628번지 1920~1921년]+崔寅奎
  - 1남 崔允卿[11통1호~1913년] (대지628 1917~1928년)
  - 1녀 崔元卿[147番戶 1913~1916년] (대지628 1913~1917년, 대지640 1913~1927년)
- 2녀 朴性東+李敦根[602번지 1919~1922년/1931년~] (대지602번지 1913~1961년, 대지601/605 1928~1961년, 대지586/596 1924년~, 대지700 1925~1936년)
  - 1남 李百祚(대지602 1961년~, 대지704 1927년~)
  - 2남 李千祚(대지606 1913~1932년, 대지700 1936~1940년)
  - 3남 李萬祚[628번지] (대지628 1928~1941년)

朴海容은 628번지에 접한 629번지의 호주로서 장남 및 차남 가족들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장남 朴來東(1870년생)은 부친의 사망으로 1924년에 이 호를 계승하여 아우 朴碩東(1885년생)의 가족과 함께 호를 구성한다. 그런데 박내동은 토지대장에 1913년 사정시에 이미 단계지역에 많은 전답과 함께, 부친이 호주로 있는 1,234평의 단계 629번지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일찍부터 장남에게 대지를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옆에 붙은 628번지 대지는 박해용이 장녀 박용동에게 할애한 토지가 아닐까 여겨진다.[25] 남편 崔寅奎의 친척은 단계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628번지와 629번지 주위

24) 朴海容은 문과급제자로 단계 거주하는 순천박씨의 종가 자손이다(『順天朴氏判尹公派譜』, 1994년 간행), 백승민, 앞의 2019년 논문 참조.

25) 최원경은 628번지 473평의 대지 이외에도 640번지 428坪의 대지를 소유했다. 640번지 대지는 1927년에 574번지에 거주하는 鄭秀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순천박씨와 정수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백승민, 위의 2019년 논문을 참조(“단계리에 3칸 와가를 소유하고 있던 朴海安의 장녀 朴鳳好는 1928년 東萊鄭氏 鄭秀萬의 차남 鄭啓煥과 혼인한다. 정수만은 1930년 함양군 안의면으로 이거하지만, 1923년에 순천박씨 일가였던 朴寅鉉이 건립한 단계보통학교에 700원 가량의 악기

의 대지는 순천박씨가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26] 이들은 5대조 이상의 선조를 공유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박내동이 거주하고 소유하던 대규모의 대지는 1939년에 그의 사망과 함께 순천박씨 종중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대지를 상속 받을 적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대지 소유와 거주에 있어 여전히 인척관계가 고려되는 한편으로 부계친족 연대의 의지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도 찾아볼 수 있다.

2. 1910년대 호적상의 주소와 단계리의 거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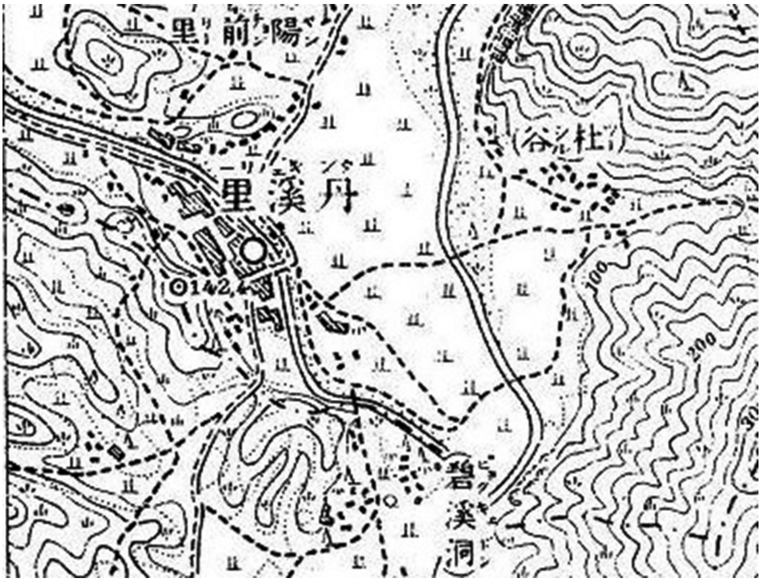

〈그림 1〉 1910년대 단계리 지도 (『朝鮮五萬分一地形圖』 三嘉 일부,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

와 운동기구를 기부하였다. 또한 정수만의 장녀 鄭希南은 1917년 단계리 거주 안동권씨 방계 權相郃의 사남 權德鳳과 혼인하였다.").

26) 1913년 토지사정 당시에 625번지 대지 朴海安, 626번지 대지 朴海益, 627번지 답 최원경, 628번지 대지 최원경, 629번지 대지 朴海容, 630번지 대지 朴熙東, 631번지 대지 朴亨東, 632/633번지 답 朴寅鉉이 각각의 소유자이다.

위의 최윤경ㆍ최원경호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식민지호적의 주소란에는 시기에 따라 '統-戶', '番戶', '番地'로 기재양식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09년에 작성되기 시작하는 민적 작성의 초기에는 해마다 '行政里' 단위로 재구성되는 대한제국기 '신호적'의 '統-戶' 주소를 이어받았다.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마을' 단위에 가깝게 세분화되어가던 洞里가 1914년의 '군면리통폐합' 과정에서 다시 통합되어 큰 규모의 행정리로 설정되고, 面 단위의 범위도 확대, 통합되었다. 분석대상이 되는 산청군 신등면은 구래의 丹城郡 신등면과 法物也面이 '신등면'으로 통합되었고, 신등면의 단계리에는 인접한 都山面 碧溪里의 일부가 편입되었다.[27] 당시의 주소는 '통-호' 형식에 대신해서 행정리 단위로 일률적인 '番戶'가 부여되었다.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의 호구파악에서는 선별적인 등재 관행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호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호구조사를 시행할 때마다 일련의 통호수를 달리 부여하게 된다. 민적 작성 초기의 '통-호' 형식 기재는 현존하는 모든 호구를 호적장부에 등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전의 방식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28] 군면리통폐합을 계기로 '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게 되었지만, 1910년대 중엽 당시에도 모든 호구가 파악되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더러, '통-호'든 '번호'든 토지와는 별도로 호를 파악하는 방식이었다. 같은 시기에 토지조사사업의 '査定'으로 모든 토지에 '番地'를 부여, 垈地의 지번을 호의 주소로 설정했다. 선별적으로 등재되거나 유동적인 호를 빈번한 호구의 거주이동과 상관없이 가옥이 건립된—정확히 말해 가옥에 거주하는 世帶를 단위로 하는— 고정된 대지의 번호로 일원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마을의 지리적인 위치도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등면 제적부에서 '통-호' 기재방식은 민적 초기에 작성되어 1914년 이전에 제적된 18개의 호에서 발견된다. 1914년 이후에 제적된 호에서는 '번호' 양식을 찾을 수 있다. '번호'만을 기록하는 30여 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제적된 호에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번호' 주소를 지우고 토지조사로 바뀐 '번지' 주소를 옆에 기록한다. 이 '번호' 양식은 1918년까지 나타난다. 1913~14년의 토지 사정으로 확정된 대지 지번이 호의 주소로 바로 반영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1918년 이후에 작성된

27) 「慶尙南道丹城郡面洞疆界略圖」, 1914년 1월 臨時土地調査局 작성, 국가기록원; 「면ㆍ동ㆍ리 명칭과 경계에 관한 건(○○○→임시토지조사국장: 1914.2.17.)」(경상남도 단성), 국가기록원.

28) 손병규, 앞의 2006 논문, 1~39면.

호적에는 대지 번지수만이 주소로 기록된다.

토지조사로 부여된 지번에 따라 지적도에서 대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통-호’ 주소나 ‘번호’ 주소만으로는 지적도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번호’와 ‘번지’ 주소가 병기된 호로부터 ‘번호’의 부여 순서를 짐작할 수 있다. 단계리 ‘1번호’는 1926년에 호주 李成根의 사망으로 제적된 ‘773번지’ 호이다. 지적도상 단계 본촌으로 들어가는 하단부 진입로의 첫 번째 대지에 해당한다. 그 뒤로 인접 대지를 거치며 북서로 펼쳐진 단계 본촌을 휘젓듯이 ‘번호’의 순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동리 입구부터 ‘家座’에 따라 호구를 조사한다는 전통적 호구조사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리로서 단계리는 단계 본촌을 중심으로 본촌의 북동면에 접하여 가로지르는 단계천을 넘어 단계 남단에도 여러 호가 모여있다. ‘번호’ 양식으로 이 남단마을—현재 그렇게 지칭되고 있다—은 ‘202번호’ 이후로 확인된다. 토지대장에 1913~1914년 사정시에 대지 소유자들 대부분이 인접한 ‘도산면 벽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15년에 일제히 ‘단계리’로 주소를 변경하고 있다. ‘벽계동’ 일부를 ‘단계리’로 통합한 결과였다. 이 남단마을은 단계 본촌에서 앞쪽 단계천을 바로 넘어 위치한다.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을 끼고 동북쪽 신등천을 넘어 두곡마을이 있다. 두곡마을은 본래 단계와는 별도의 행정리로 독립되어 있다가 단계리로 통합된 곳이다. 이곳 ‘번호’는 대체로 220~60번대의 순번이었다.

신등면 단계리 호적에서 대지 지번이 주소로 확정되기 직전에 사용된 이 ‘번호’는 단계리 본촌을 시작으로 남단마을과 두곡으로 마을의 집락 상황을 고려하여 순번이 부여되었다. 단계리 전체에 모두 270호 정도가 파악된 셈인데, 토지사정으로 인한 1913~1914년 당시의 대지 필지수 227필지보다 많다. ‘번호’와 ‘번지’가 병기된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번지에 복수의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29] 다른 ‘번호’의 호들은 서로 다른 가족이다. 또한 ‘~번호-1‘과 같이 ‘번호’를 분할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30] 이들도 각각 다른 호이며, 다른 가족이다. 동일한 ‘번호’에 다른

29) 98번지에는 각각 243, 244번호의 호가, 99번지에는 217, 218번호의 호가, 579번지에는 123, 124, 160번호의 호가, 588번지에는 165, 168-1번호의 호가, 600번지에는 158, 159번호의 호가 병존한다. 번호를 달리 하는 호들은 대부분 토지사정 이후 해당 대지도 분할된다. 243번호의 호는 98-1번지로, 218번호의 호는 99-1번지로, 159번호는 600-4번지로 분할된 대지에 존재한다. 그러나 대지가 분할된다고 해서 해당 번호의 호주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지 지번을 갖는 경우는 없다. '번호'는 동일 필지의 대지에 있더라도 별도로 존재하는 각각의 '호'에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번호'를 가진 서로 다른 호들도 발견된다.31) 이들은 동일한 대지 지번으로 존재한다. 동일 필지의 대지 위에 있는 각기 다른 복수의 호에 같은 '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호가 같은 가옥에 거주하든가 별도의 가옥에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같은 대지에 세워져있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번호'가 부여되거나 '번호'가 분할되는 경우도 있음은 밝힌 바이다. 동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같은 집'이라는 인식 범위는 조사하는 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겠지만, 각 호 사이의 관계도 하나의 판단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토지조사로 인한 토지 지번은 대지와 전답, 임야와 같은 지목 구분과 관계없이 단계리 전체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여된다. 더구나 토지조사 순서는 '번호' 주소 순서와 달리 두곡마을이 있는 단계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집락여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32) 남단마을과 단계본촌에 이르러서는 마을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두 마을을 오가는 식으로 번지수가 부여되었다. 토지조사로 행정리의 경계는 분명히 할 수 있었겠지만,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는 자연지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음을 말한다. 이전부터 토지의 소유와 사용의 경제적 관계,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사회적 관계가 다기적으로 작용하고 그나마 유동적이었다.33)

대지의 소유와 거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번지수에 호주가 서로 다른 복수의 호가 성립해 있다. 시기를 달리하여 가족간의 호주변동이나 대지 소유권 계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동일시기에 병존하는 호들은 서로 다른 가족

30) 94-3번호, 215-1번호, 263-1번호, 119-1번호, 168-1번호, 의 경우가 그러하다. 분할된 번호의 호는 각각 다른 가족이다. 263-1번호의 호는 就籍申請으로 새롭게 등재된 호이다.

31) 23번호(653번지), 71번호(702번지), 206번호(372번지), 257번호(77번지), 263번호(67번지), 264번호(66번지)에는 동일 번호에 복수의 호가 존재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족이다.

32) 지적도「丹城郡新等面丹溪里原圖」(1914년11월15일 측도완성), 국가기록원.

33) 조선시대의 토지조사인 量田도 모든 전답과 대지가 획일적으로 조사되었는데, 면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면단위의 조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천의 자연지리적인 경계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었다(김건태, 앞의 2019 논문, 185~226면, 손병규, 앞의 2018 논문, 41~80면).

들이다. 대지 지번은 그 필지의 소유자별로 부여될 뿐이므로, 그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호만이 아니라 가옥의 소유자나 임대한 자의 호가 병존하는 것이다.[34] 토지사정 이후 '○○-1번지'와 같이 대지가 분할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소유권이 분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의 구분과는 관계가 없다. 한사람이 복수의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존재한다.

단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번호'가 분리된 사례의 대부분은 대지 지번이 분할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35] 호주의 대지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토지대장에 대지의 분할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호적에만 대지 지번이 분할되어 있는 셈이다. 대지 지번은 소유권에 의거하지만, 호적상에는 대지 지번의 분할로 서로 다른 호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식은 남아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1910년대 주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보건대, 식민지 당국의 주민 파악은 가족 단위로 '호'를 구성하는 전통적인—동아시아 공통의— 방법을 견지하면서도, 주소를 거주지인 대지 지번으로 일원화하여 '本籍地'로 고착시키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현 거주지와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단시간의 임시적 거주이동은 '寄留簿'나 '戶籍附標'로 등록하게 하면서도,[36] 출신지에 근거를 두는 '본적지주의' 호적으로 식민지 조선인을 파악하는 근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개개인의 '出身'이라 함은 본적지라는 지리적 연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연장자 남성을 가장으로 대규모화하는 '근대적 가부장제' 가족의 혈연적 연원을 의미한다.[37] 상기한 식민지 초기의 '同族部落' 조사도 이러한 정책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

34) 단계리의 제적 호적에는 98, 157, 371, 372, 555, 556, 557, 564, 566, 574, 579, 588, 589, 590, 600, 602, 604, 610, 611, 621, 622, 626, 628, 629, 630, 631, 636, 653, 673, 674-1, 681, 700, 739, 751, 759번지에 소유자의 호와 소유자가 아닌 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112, 163, 554, 563, 640, 661, 671, 672, 682, 715, 749, 773, 792, 807, 813, 838번지에는 소유자의 호는 제적 호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소유자가 아닌 복수의 호를 발견할 수 있다. 691, 694, 704, 708번지는 국유지로 여러 호가 존재하는데, 1923년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서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35) 215-1번호의 호는 대지 지번이 102-1번지이고, 263-1번호의 호는 67-1번지, 168-1번호는 588-1번지로 지번도 분할된다. 그러나 토지대장에 그 대지들은 사정 이후 분할되지 않았다. 호적에만 대지가 분할되어 있는 셈이다.

36) 박희진, 앞의 2009 논문, 61~82면.

37) 손병규, 앞의 2006 논문, 1~39면.

개별 마을 내부에 존재할 법한 공동체성이나 지역간 차별 인식이 토지조사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자치성이 억압받는 측면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호적파악에 대해 개개인의 생년월일이나 여성의 본명을 공식적인 자료로 표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제외하고 주민이 저항할 여지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8] 가족 단위로 개별화하여 균등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오래된 주민 파악 방법이 식민지시대에 관철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적인 결집은 지역을 넘어서는 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쪽으로 유용성이 모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垈地 소유로 보는 1910년대 단계리의 사회구조

토지대장의 토지 필지마다 기록되는 토지소유자는 사회공공재로 사용되는 國有地, 面有地를 제외하고, 문중이나 회사와 같은 사회조직의 공유지에도 개개인의 명의로 기록된다. 그런데 개인의 배타적 사적 소유는 근대적 가족제도하에서 가족이나 호를 대표하는 家長, 戶主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지만 연장자 남성을 가장으로 삼아 가족단위로 민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여성이 가장으로 등장한다. 호주와 토지소유자도 그러한 이념에 영향을 받아 기록됨으로써 여성은 예외적 존재로만 나타난다. 1910년대의 토지대장에서 토지소유자를 현실적으로 '가족(=世帶)을 대표하는 자'로 설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1910년대 단계리 주민의 거주환경에 대해, 주민의 경제적 위상을 대지 소유 여부와 규모로부터 살펴보자. 가족의 경제적 위상은 대지만이 아니라 소유하는 전답을 모두 포함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대지 소유관계는 거주 및 이동의 직접적인 경제 요인이다. 대지와 가옥의 존재는 거주의 안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귀향의 수월함을 염두에 둔 거주이동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시기 거주이동에는 출신지—특히 '세거지'—를 부계혈연적 연원의 중심점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

38) 손병규, 앞의 2011 논문, 23~49면.

〈표 1〉 단계리내 마을에 따른 대지 규모별 필지수의 분포 (단위; 필지수)

대지규모	1~50평	51~100평	101~200평	201~500평	501평이상	계
본촌내륙	17	20	33	33	6	109
본촌강변	14	12	7	2	1	36
남단마을	5	8	2	4	1	20
두곡	7	20	20	7		54
계	43	60	62	46	8	219

<참고> 단계리 토지대장.

단계리의 토지조사는 1913년 11월에 처음으로 査定이 이루어지고 이듬해 1914년 9월에 몇몇 토지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지적도는 토지대장과 함께 그 결과물로 제출되었다. 1913~1914년 당시에 조사된 단계리의 垈地는 모두 227필지인데, 이 가운데 국유지 8필지를 제하고 주민들이 소유한 필지는 219필지이다. 우선 단계리 내의 마을을 단계본촌과 남단마을, 두곡으로 나누고 단계본촌 가운데에서도 단계천에 면한 강변의 대지를 구별하도록 한다. 단계 본촌의 강변 지역을 별도의 마을로 인식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범람이 잦아서 거주하기 불안정하고 차후에 대부분의 대지가 홍수를 막기 위한 제언으로 수용되었다.[39] 마을의 그러한 구분에 의거해서 대지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거주의 중심은 안동권씨와 순천박씨의 世居地로 유명한 단계 본촌이다. 국유지를 제외하고 토지조사사업시에 145필지가 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지가 단계천에 면한 강변지역에 36필지가 존재한다. 본촌내륙 지역에 101평 이상의 필지가 66%인 것에 반해, 본촌강변 지역은 100평 이하의 필지가 72%를 차지한다. 남단마을도 대지가 20필지 가운데 100평 이하의 영세한 필지가 65%를 차지한다. 이곳 대지는 강변에 접한 것도 있을뿐더러 단계천과 신등천 사이의 낮은 평야지대에 걸쳐있다. 농경작업에는 편리할지 모르나 홍수에 취약한 것은 본촌강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곡은 대지가 54필지인데, 가장 큰 규모의 대지가 366평에 그친다. 51~200평의 대지가 74%를 차지하여 대지 규모가 대체로 균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39) 1920년 9월 7일에 단계 강변 거주 사망자가 한꺼번에 다수 발생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신문기사에도 홍수로 인한 단계 지역의 인명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표 2〉 성씨별 소유 대지 필지수와 필지의 평균 지적평수 (단위; 필지, 평)

대지규모 구분	본촌내륙			본촌강변			남단마을			두곡		
	성씨별	필지	평균 지적	성씨별	필지	평균 지적	성씨별	필지	평균 지적	성씨별	필지	평균 지적
200평 이상	안동권	15	391	풍산홍	1	542	진양유	1	891	안동권	4	267
	순천박	11	506	상산김	1	484	안동권	1	455	남원양	2	306
	삭녕최	2	451	안동권	1	413	김녕김	1	309	안동김	1	238
	상산김	2	302				금의이	1	225			
	성산이	2	264				재령이	1	215			
	전주이	2	262									
	진양유	2	228									
	나주임	1	267									
	해주정	1	214									
	진양강	1	202									
200평 이하	안동권	16	112	안동권	9	73	김녕김	5	79	안동권	23	93
	순천박	13	80	진양유	6	118	안동권	4	59	남원양	6	107
	밀양박	7	123							영산신	3	92
	상산김	3	127							성산이	3	86
	진양유	3	114							진양유	3	85
	전주이	3	72									
	17성씨	25	92	15성씨	18	53	6성씨	6	62	8성씨	9	90
계	24성씨	109	206	19성씨	36	102	10성씨	20	155	14성씨	54	117
국유지		5	410		1	136		2	300			

<참고> 단계리 토지대장,
* 각 성씨별로 소유 대지의 필지수와 지적 평수의 평균을 계산했다. 동일한 소유자도 필지별로 집계했다.
* 200평 이하는 동일성씨 3~4필지 이상인 사례에 한해 제시하며, 기타 성씨는 합산했다.

마을별 대지의 평균규모는 본촌내륙이 206평, 본촌강변이 102평, 남단마을이 155평, 두곡이 117평으로 위의 대지 규모별 분포와 부합된다. 여기에 마을별로 대지 소유자들을 동성동본 성씨별로 집계하여 소유하는 대지의 필지수와 필지당 평균 평수를 살펴보자. 국유지를 제외한 단계리 대지는 모두 219필지이지만, 한사람이 두

필지의 대지를 소유하는 자가 16명, 세 필지의 대지를 소유하는 자가 2명이어서 대지 소유자수는 207명으로 집계된다. 이 당시에 단계리를 벗어나서 거주하는 대지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계리 내의 다른 마을에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 마을별 관찰에는 역시 필지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성씨별 대지 소유현황을 개괄하면, 우선 본촌내륙은 국유지 대지 5필지를 제외하고 109필지를 24성씨가 나누어 소유한다(<표 2>). 이 가운데 소유하는 필지가 200평 이상인 경우가 39필지인데, 안동권씨가 15필지, 순천박씨가 11필지를 소유한다. 단계 본촌에 이들 2대 大姓이 소유하는 대지 규모도 타성이 소유하는 대지의 규모에 비해 월등히 크다.

하지만 이들 이외에 200평 이상의 대지를 소유하는 8개 성씨의 13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안동권씨와 순천박씨의 동성촌락에 경제적 기반이 그에 못지않은 성씨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삭령최씨나 성산이씨는 순천박씨와의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앞의 사례분석에서 본 바 있다. 또한 상산김씨 金壽老는 '단성민란'을 주도했던 '金麟燮'의 장남으로,[40] 본촌내륙에 348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인섭가는 상산김씨들이 모여 사는 구 '법물야면'의 '平地'에서 단계로 이주하여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는데, 단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41]

한편, 대지 200평 이하인 경우도 본촌내륙에 70필지가 존재하는데, 역시 안동권씨가 16필지, 순천박씨가 13필지의 대지를 소유한다. 적은 규모의 대지를 소유하더라도 이 두 성씨가 본촌내륙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몇몇 성씨가 200평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4~5필지를 소유하기는 하지만, 밀양박씨가 7필지를 소유하는 이외에 군소 성씨들이 적은 규모의 대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단지 마을의 대성이라 하더라도 거주를 위한 경제적 기반에는 세대마다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본촌강변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36필지의 대지가 19성씨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400평 이상의 3필지는 안동권씨, 풍산홍씨, 상산김씨가 각각 소유하는 한편에, 안동

---

40) 김인섭 자 金壽老 제적부 단계 555번지, 김인섭 1903년 8월 14일 사망으로 호주계승.

41) 정진영,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在村兩班地主家의 농업경영-경상도 단성 金麟燮家의 家作地경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2, 대동문화연구원, 2008, 105~148면;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在村兩班地主家의 농업경영(2)-경상도 단성 金麟燮家의 幷作地경영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67, 경남사학회, 2008, 139~185면.

권씨와 진양유씨가 대지를 다수 소유하나 200평 이하의 적은 규모이다. 나머지 전체 필지의 반을 15개의 군소 성씨들이 평균 53평의 대지를 나누어 소유할 뿐이다. 남단 마을도 국유지를 제외한 20필지의 대지 가운데 200평 이상의 대지를 소유하는 5개 성씨의 5개 필지가 있을 뿐, 다수를 차지하는 안동권씨와 김녕김씨는 대부분 20평 이하의 대지를 소유한다. 두 마을 모두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인 두드러진 대성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적은 규모의 대지를 나누어 소유하는 데에 그친다. 단지 진양유씨는 소규모의 대지를 본촌의 강변지역에 집중적으로 소유하지만, 단계천 맞은편의 남단마을에 대규모의 대지를 소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두곡마을은 대지 54필지 가운데 안동권씨와 남원양씨가 34필지(63%)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평 이상인 대지가 7필지에 지나지 않지만 그 대부분도 그들이 소유한다. 안동권씨와 남원양씨 이외의 11성씨가 18필지 평균 90평 전후의 대지를 소유한다. 두곡은 단계 본촌과 같이 대성이 존재하는 동성촌락이라 할 수 있으나, 본촌과 달리 대지소유규모의 격차가 크지 않아, 동성집단이 마을의 공동체성을 주도하기에 유리한 조건임을 짐작케 한다.

특히 두곡의 안동권씨는 대부분 17세기 단성현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東溪公 權濤'의 후손들이다.[42] 동계공파의 종손 權肅潾은 '宗中財産'으로 단계 본촌에 492평을 소유하지만, 두곡마을에도 144평과 366평을 소유하고 있다. 두곡의 두 필지에는 권도가 말년에 거주했던 '東溪亭舍'가 있었으며, 1788년에 사액을 받은 '浣溪書院'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하나의 일족이 경제적으로 상위를 이루면서 대대로 집거하여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집성촌' 혹은 '동성촌락'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두곡마을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광범위한 성씨집단을 설정하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단계 본촌을 중심으로 하는 광의의 '동성촌락'이 규정될 수도 있다. '동성촌락'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는 다양한 역사성과 함께 변화의 경향성이 전제되는 유동적인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지역을 넘어서는 거주이동의 양상이 '동성촌락'이 가지고 있을 법한 여러 종류의 '지역공동체적' 구속력을 의심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42) 『安東權氏派譜(東溪公派)』(1934년 편찬), 국립중앙도서관. 손병규, 앞의 2015 논문, 65~92면 참조.

Ⅲ.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양상과 성격

1. 호적의 '移去' 양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적부는 호주의 제적으로 인하여 호구성원의 기록 전체를 호적부에서 빼내어 모아놓은 장부로, 제적되는 연도별로 철해졌다. 식민지 호적은 1909년에 작성되기 시작했으므로 제적부에는 호적의 제적이 1910년도부터 확인이 된다. 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할 때의 호구 정보는 조선시대 '구호적'과 '신호적'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타인의 호적에 '附籍'으로 기록되던 가족들이 독립된 호로 재편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호적장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많은 가족들이 1923년의 '호적령'이 반포되기까지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도 적지 않다.

〈표 3〉 단계리 호적의 제적사유에 따른 시기별 사례분포 (단위; 호)

제적사유	제적시기 구분				
	1910~1919년	1920~1929년	1930~1939년	1940~1945년	계
사망	57	78	70	45	250
전적	27	63	64	15	169
거처불명	2				2
실가복적	1				1
합가	1				1
입가	2		1		3
호주상속		1			1
혼인		1	3	3	7
재혼			2		2
오류정정	2				2
(미상)	1	1	1	1	4
계	93	144	141	64	442

<참고> 제적부 단계리 1910~1945년

여기서는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제적된 호적을 모은 제적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호주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남겨진 자료이므로 호적이 형성된 이후로 1945년 이전에 호주변동사항이 없는 호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보관상 분실된 호적들도 확인할 수 없다.

20세기 전반, 단계리의 호주가 제적되는 사례는 442호로 집계된다(<표 3>). 제적 사유는 '사망'이 250호로 과반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거주 이전한 '轉籍' 169호이다. 그 외에도 유리걸식으로 거처가 불분명하여 제적된 경우, '分家'했던 가족이 다시 실가로 복적하거나 '合家', '入家'하기 위해 제적되는 경우, 다른 호의 호주를 상속하기 위해서 제적된 경우도 있다. 여성호주가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으로 인해 移居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호적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제적되는 등, 거주이동과 관계없는 제적이 있다. 거처불명, 실가복적, 합가, 입가, 오류정정과 같은 종류의 제적은 1910년대를 통해 식민지 호적이 정비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 반대로 식민지 말기의 1940년대에는 전시상황에서 호주변동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전적으로 인한 제적이 다수 결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가 사망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제적되는 경우는 호주 개인의 제적에 그치지만, 전적과 분가 및 합가 · 입가 등은 대부분 가장이 가족을 이끌고 이동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호를 단위로 제적되는 자료상의 특성에 따라 사망을 비롯한 호주의 이동을 기준으로 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망으로 제적되는 사례들과 호내 구성원들의 혼인 기록은 거주를 이동하는 '이거' 사례의 경향을 가늠하기 위한 상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이거의 빈도는 통계상 현거주 총수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어야 하나, 제적부 자료는 당시 주민 전체의 현상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망과 이거의 사례를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 이거의 경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뒤에서 분석하는 '이거비'라는 개념도 현거주 호의 총수에 대한 이거호의 비율이 아니라 사망으로 제적된 호수에 대한 이거호 호수의 '대비율'로 제시했다. 이거의 빈도는 인위적인 결과이지만, 사망의 빈도는 그에 비해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제적되는 호가 애초에 성립될 때의 연원으로부터 거주이전의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민적을 작성하기 시작한 1909년 당시에 세워진—'立戶'한— 호는 호가 성립되었던 연원을 밝히고 있다. 호적의 호주에게는 '호주된 원인 및 연월일'을 쓰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전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가 되었는지, 기존의

호로부터 ‘분가’하면서 호주가 되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1909년 이전에 성립해 있던 호들이다. 이에 반해 1910년 이후에 성립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제적된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1910년 이후에 새롭게 호를 형성하여 ‘立戶’한 경우와 기존의 호적에서 ‘分家—호적상으로는 分戶—’한 경우, 타지에서 이 지역으로 ‘移來’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표 4〉 제적사유와 호성립으로부터 제적까지의 기간에 따른 사례의 수와 비율

제적사유 및 호성립 구분		제적까지의 기간 구분							계(%)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35년		
사망	1909입호	5	35	19	23	21	16	14	133	(53%)
	1910입호	13	16	6	10	3	2		50	(20%)
	1910분가	7	2	3	4	1	3		20	(8%)
	1910이래	21	9	4	7	1	4		46	(18%)
	계	46	62	32	44	26	25	14	249	(100%)
	(%)	(18%)	(25%)	(13%)	(18%)	(10%)	(10%)	(6%)	(100%)	
이거	1909입호	10	7	8	7	2	3	2	39	(21%)
	1910입호	24	13	15	6	5	2	1	66	(36%)
	1910분가	17	3	1	3				24	(13%)
	1910이래	23	12	9	9	3			56	(30%)
	계	74	35	33	25	11	5	3	185	(100%)
	(%)	(40%)	(19%)	(18%)	(14%)	(6%)	(3%)	(2%)	(100%)	
총계		120	98	65	69	36	30	17	434	

<참고> 제적부 단계리 1910~1945년

* ‘1909입호’는 1909년에 형성된 호, ‘1910입호’와 ‘1910분가’는 1910년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호와 분가한 호, ‘1910이래’는 1910년 이후에 이래한 호를 말한다.

제적부 1910~45년 사이의 제적 호적은 모두 442호인데, 오류정정 2호, 제적사유가 미상인 4호, 이래 시기를 알 수 없는 2호를 제외한 434호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사망으로 인한 제적이 249호, 전적 및 혼인과 유리등으로 이거하는 것이 185호이다(<표 4>).

사망으로 제적된 호는 1909년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경우가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1910년 이후에 새롭게 입호하거나 기존의 호로부터 분가한 경우가 28%, 1910년 이후에 이 지역에 이래한 경우가 18%에 머문다.[43] 이에 반해 전적등으로 이거한 호는 1909년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경우가 21%에 머물고, 1910년 이후에 호가 성립하거나 분가한 경우가 49%, 이래한 경우가 30%로 그보다 높다.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던 호는 호주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반면에 생긴지 오래지 않고 타지에서 이래한 경우에 더 높은 비율로 이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을 살펴보자. 제적될 때까지의 기간은 1910년 이후에 새롭게 호를 형성하거나 이거해온 시점으로부터 계산하지만, 1909년 이전에 형성되었던 호는 1909년을 기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으로 제적되는 호는 평균 14.2년 머무는 것에 반해, 이거하는 호는 평균 9.7년 머문다. 이거한 호는 이 지역에 5년 이하로 머문 경우가 40%에 달한다. 근 80%에 가까운 호들이 15년 이내에 머물다가 이거했다. 사망하여 제적된 호로 5년 이하인 경우가 18%, 15년 이하인 경우가 56%인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이거하는 호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안착했던 가족이 아니라, 생성되거나 이래한 지 오래지 않은 가족임을 알 수 있다. 주민 가운데에는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거주를 빈번하게 이동하는 부류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제적사유와 호성립으로부터 제적까지의 기간에 따라 제적 당시 호주의 평균연령을 계산해보면 거주 이전하는 호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표 5>). 이거함으로써 제적된 호의 호주 나이는 평균 43세이다. 1910년 이후에 새롭게 성립된 호는 1909년 이전에 성립한 호보다 젊은 호주가 등장했으며, 기존의 호로부터 분가한 호의 호주는 다시 그보다 젊다. 호적에 젊은 호주의 호들이 계속 생성되어 갔음을 말한다. 젊은 호주들이어서 평균 사망연령도 낮게 나타난다. 호가 성립하거나 분가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거하는 호주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들이 가장 젊은 층을 이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이거하는 호주의 연령은 사망한 경우의 평균연령에 비해 현격히 낮다.[44] 정착할 사회경제적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

43) 타지역에서 분가하여 이 지역으로 이래한 경우는 '이래'에 포함시켰다.

44) 1909년에 성립되어 있던 호의 호주가 사망한 경우와 이거한 경우의 평균연령차는 5년 이내에 제적된 경우에 13세(=56세~43세), 6~10년 사이 제적에서 11세(=61세~50세)의 격차를 보이는

〈표 5〉 제적사유와 호 성립으로부터 제적까지의 기간에 따른 제적시 호주의 평균연령

제적사유 및 호성립 구분		제적까지의 기간 구분							계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35년	
사망	1909입호	56	61	62	66	70	71	70	65
	1910입호	41	50	42	50	55	67		48
	1910분가	32	39	42	52	70	52		43
	1910이래	63	68	65	62	77	60		64
	계	51	58	57	60	69	66	70	60
이거	1909입호	43	50	50	49	56	65	62	50
	1910입호	34	36	38	55	47	48	45	39
	1910분가	29	32	50	44				32
	1910이래	43	54	57	46	66			49
	계	37	44	46	49	54	58	56	43

<참고> 제적부 단계리 1910~45년. '1909입호'등의 호성립 구분은 위의 표와 동일함

그런데 사망으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나 이거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각각 1910년 이후로 이 지역에 이래한 가족의 호주들은 1909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가족의 호주들과 같은 정도의 연장자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제적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1909년 이전부터 성립해 있던 호의 호주보다 높은 평균연령을 보인다. 단계지역으로 이래하는 가족들은 연장자가 가장으로 존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경제적 위상도 그리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했다가 머지않아 이거하는 가족 가운데에는 이러한 부류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계리는 농촌 지역 가운데에서도 주변의 건실한 가족들이 들어와 거주하고자 하는 곳임과 동시에 타지로 이동하기 위한 경유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데 반해, 1910년 이후로 이래한 호의 호주가 사망한 경우와 이거한 경우의 평균연령차는 5년 이내 제적한 경우에 20세(=63세~43세), 6~10년 사이에 제적된 경우에 14세(=68세~54세)의 격차를 보인다.

2. '移來移去'의 지리적 범위

가족단위 거주이동으로 제적되는 호주를 대상으로 그 지리적 범위를 분석할 때에는 제적처리 사무상 발생하는 기록의 특성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호적을 관리하는 행정면 내에서 거주이동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단계리가 속한 신등면 내로 '轉籍'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호적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 호적의 주소를 줄로 그어 지우고 옆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적 사유로 거주이동의 사실을 명기하면서 단계리 '本洞' 내로 이거하는 사례는 3호, 단계리 이외의 신등면 내의 타리로 이거하는 사례는 5호에 그친다. 그것도 1910년대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면단위의 식민지호적 관리가 안정화되기 전에 발생한 기록으로 보인다.

단계리 호적이 '분가'로 성립되었음을 기록하는 44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어디에서 분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4건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는 191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호적이 제적되기 전에 해당 호적에 이미 자식이나 형제의 가족이 '분가'한 기록을 50건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가하는 장소를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32건이 단계리 내에서, 5건이 신등면 내의 타리로 분가한다. 분가는 주로 단계리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등면을 넘어 이동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다.

호적이 단계리에 세워지는 연원으로 본동과 기타 신등면 내의 동리에서 '移來'한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호적이 단계리로 이래하여 성립한 사례는 107건인데, 단계리 내에서 이래한 20건과 신등면 내 다른 동리에서 이래한 15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도 191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본동 내 18건, 신등면 내 8건—. 신등면 내의 주소변동은 민적이 작성되는 초기 과정에서 기록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분가' 상황에서 본 것과 같이, 호적을 관리하는 신등면 내의 이래이거는 자료상 표면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등면 내의 이동 사례가 '移來'의 경우에 다수 발견되지만, 그 경향을 '移去'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단지 '이래'가 구 단성현 지역으로부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거'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한 지역으로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읽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 단계리 가족의 '이래이거'는 가까운 구래의 생활영역에서 '移入'하여 더 먼 곳으로의 '移出'하는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표 6〉 이래이거의 범위 분포와 혼인으로 인한 이동 범위와의 비교 (단위; 건, %)

구분	본동	신등	단성	진주	산청	인군	경상도	타도	경성 일본	계
이거	3	5	35	25	19	27	52	7		173
이래	20	15	24	12	9	12	13	2		107
이거%	2%	3%	20%	14%	11%	16%	30%	4%	0%	100%
이래%	19%	14%	22%	11%	8%	11%	12%	2%	0%	100%
혼인거	26	34	21	21	18	48	15	5	1	189
혼인래	17	28	53	26	17	40	18	2	3	204
혼인거%	14%	18%	11%	11%	10%	25%	8%	3%	1%	100%
혼인래%	8%	14%	26%	13%	8%	20%	9%	1%	1%	100%

<참고> '신등'은 본동인 단계리를 제외한 신등면 내 타동리에서의 이동, '단성'은 구단성현 지역 내에 신등면을 제외한 타면에서의 이동, '산청'은 구단성현 지역을 제외한 면리에서의 이동이다. '인군'은 진주와 산청 이외에 구단성현에 인접한 합천(삼가, 가회 등지), 의령 지역이다.

단계리 가족의 이래이거의 특성을 민적 작성 초기의 자료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혼인으로 인한 개별 여성의 인구이동 경향과 비교해보자(<표 6>). 구 단성현 내의 혼인으로 인한 이동은 이거 43%, 이래 48%로 각각 반수에 육박한다. 전통적인 혼인권역이 여전히 견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신등면 이외의 단성지역으로 혼인해 가는 비율이 이거의 11%인데 반해, 그곳에서 혼인해 오는 비율은 이래의 26%나 된다. 구 단성현 내에서 단계리는 혼인을 하러 오는 중심지였음을 말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단계리의 혼인네트워크는 넓어야 주변의 인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가족의 이거가 경상도까지 확대되는 양상과 대조된다. 이 시기에 혼인은 여전히 가까운 지역의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혼인으로 형성된 이후의 가족 이동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이주권역의 확대 경향이 가족의 사회적 불안정성을 더하는 대신에 혈연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표 7〉 대지소유 유무에 따른 이거 범위의 양상, 혼인으로 인한 이거와의 비교 (건, %)

대지소유		본동	신등	단성	진주	산청	인군	경상	타도	경성	계
이거	무		4	23	16	13	18	34	6		114
	유	3	1	12	9	6	9	18	1		59
	무%		4%	20%	14%	11%	16%	30%	5%		100%
	유%	5%	2%	20%	15%	10%	15%	31%	2%		100%
혼인거	무	13	9	9	7	5	22	7	3		75
	유	13	25	12	14	13	26	8	2	1	114
	무%	17%	12%	12%	9%	7%	29%	9%	4%		100%
	유%	11%	22%	11%	12%	11%	23%	7%	2%	1%	100%

<참고> 이동의 범위의 구분은 위의 표와 같다. ‘무’는 단계리에 대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유’는 소유한 경우의 구분이다.

호주의 대지 소유여부에 따라 호주 및 가족구성원의 이거하는 범위를 살펴보자(<표 7>). 우선 혼인으로 가족구성원이 이거하는 사례는 호주가 대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75건이며,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114건이다. 경제적 기반이 혼인을 유리하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혼인처의 범위를 보면, 대지 무소유의 경우는 단계리 내에서의 혼인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인접 군과 그것을 넘어선 지역으로의 혼인 이거가 높은 비중(42%)을 차지한다. 대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혼인은 단계리 내에서 혼처를 찾거나 상대적으로 먼 지역으로 혼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등면 이내의 타리로 혼처를 택하거나 진주, 구 산청지역으로 혼인하는 비중이 높다. 그것을 벗어난 광범위한 혼인은 대지 무소유의 경우에 비해 낮은 편이다(33%).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혼인은 단계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범위에서 혼처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적등으로 이거하는 사례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114건에 비해,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59건에 그친다. 가족의 이거는 주로 거주할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이거하는 범위는 혼인 이거에 비해 광범위했음은 이미 언급했는데, 대지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단위의 이거 경향이 갖는 경제적 · 사회적 위상과의 관련성은 다음 장에

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3. 거주이동의 계층성과 혈연성

대지 소유 여부와 규모에 따른 호주의 이거 사례 분포를 단계리 내 마을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거하는 호의 분포는 사망으로 인한 제적 사례의 분포에 대비해서 계산한 ‘이거비’로 검토한다. 본래 이거비율이라 하면 현존하는 전체 호수 가운데 이거하는 호수의 비율을 말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비율의 모수가 되는 현거주 전체 호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적 특성 때문이다. 제적되는 호 가운데 호주의 사망으로 제적되는 사례수 249호에 대해 이거로 제적되는 사례수는 173호로 대비율은

〈표 8〉 마을별 대지소유규모에 따른 사망 대비 이거 사례의 대비율 (단위; 호, 대비율)

		무소유	1~50평	51~100평	101~200평	201~500평	501평이상	계
본촌 내륙	사망	79	10	16	21	30	6	162
	이거	89	5	3	11	11	8	127
	이거비	(113)	(50)	(19)	(52)	(37)	(133)	(78)
본촌 강변	사망	5	8	4	4	2	2	25
	이거	11	1	3		1		16
	이거비	(220)	(13)	(75)	(0)	(50)	(0)	(64)
남단 마을	사망	6		2	1	3	1	13
	이거	5			2	1		8
	이거비	(83)		(0)	(200)	(33)	(0)	(62)
두곡	사망	15	2	9	17	5	1	49
	이거	11		4	6	1		22
	이거비	(73)	(0)	(44)	(35)	(20)	(0)	(45)
계	사망	105	20	31	43	40	10	249
	이거	116	6	10	19	14	8	173
	이거비	(110)	(30)	(32)	(44)	(35)	(80)	(69)

<참고> ‘이거비’는 ‘사망’에 대한 ‘이거’의 대비율, 즉 이거/사망*100의 수치이다.

69이다. 이에 비해 대지를 소유하지 않는 자들의 사망 사례에 대한 이거 사례의 대비율은 110이다. 이거하는 호주 가운데 대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 위상이 열악한 가족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타지로 이주한다는 사실이 다시 분명해졌다.

사망으로 인한 제적에 비해 이거로 인한 제적의 대비율은 단계리의 각 마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표 8>). 먼저 비교의 기준을 두곡에서 찾아보자. 51~200평의 대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비교적 고르게 대지를 소유하는 두곡에는 사망에 대한 이거의 대비율이 4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거주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확보한 위에 거주이동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지의 평균 규모가 커서 전반적으로 주민의 경제적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단계 본촌내륙의 경우, 사망 사례에 대비한 이거 사례의 대비율은 78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거주이동이 빈번하여 거주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촌내륙의 높은 이거비는 대지를 소유하지 않는 호주의 이거가 빈번한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무소유 전체 이거비 110에 대해 113-,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는 호주가 이거하는 현상이 병행되고 있음도 주목된다. 이들은 단계리 내의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임에도 단계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홍수등으로 거주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진 본촌강변은 이거비가 64로 본촌내륙에 비해 거주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대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하는 비율이 220으로 대단히 높다. 본촌강변은 대지규모나 거주 조건으로 보아 불리한 지역인데, 이곳의 거주이동은 대지 무소유자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졌던 것이다. 이들 주민에 대한 지역적인 계층 차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강변 대지를 본촌내륙과 구분하여 관찰한 이유이다.

〈표 9〉 대지소유규모에 따른 성씨별 이거사례의 분포 (단위; 호, 필지)

		무소유	1~50평	~100평	~200평	~500평	501평~	계	비고(필지)
본촌 내륙	순천박	2				2	3	7(5)	24
	동래정						2	2(2)	
	삭녕최	2					2	4(2)	2
	성산이	4			2		1	7(3)	4
	해주정	1			1	3		5(4)	2
	안동권	11	2		2	2		17(6)	31
	진양강	4				1		5(1)	4
	전주이	2				1		3(1)	5
	나주임					1		1(1)	1
	연일정					1		1(1)	
	밀양박	8	2	1	2			13(5)	7
본촌 내륙	의성김	2			1			3(1)	
	김녕김	1			1			2(1)	
	진양정	1			1			2(1)	2
	함양오				1			1(1)	
	김해김	10		2				12(2)	3
	김해배		1					1(1)	
	기타성씨	41						41[29성씨]	24[14성씨]
	계	89	5	3	11	11	8	127(38)	
성씨/대지규모		무소유	1~50평	~100평	~200평	~500평	501평~	계	비고(필지)
본촌 강변	안동권	1	1			1		3(2)	10
	경주배			1				1(1)	
	선산김			1				1(1)	1
	순흥안			1				1(1)	1
	기타성씨	10						10[9성씨]	24[16성씨]
	계	11	1	3		1		16(5)	
성씨/대지규모		무소유	1~50평	~100평	~200평	~500평	501평~	계	비고(필지)

남단 마을	안동권				1	1		2(2)	5
	김녕김	1			1			2(1)	6
	기타성씨	4						4[4성씨]	9[8성씨]
	계	5			2	1		8(3)	
성씨/대지규모		무소유	1~50평	~100평	~200평	~500평	501평~	계	비고(필지)
두곡	안동권	2		1	2	1		6(4)	27
	고성이				1			1(1)	1
	영산신				1			1(1)	3
	전주최				1			1(1)	
	진양류				1			1(1)	3
	밀양박	1		1				2(1)	1
	인동장	1		1				2(1)	2
	성산이			1				1(1)	3
	기타성씨	7						7[7성씨]	15[8성씨]
	계	11		4	6	1		22(11)	

<참고> 계의 ( )는 대지를 소유하는 호수이다. 기타성씨 계의 [ ]는 성씨의 숫자이다. 비고는 1910년대 성씨별 대지 소유 현황으로 단위는 필지이다. 비고의 [ ]도 나머지 대지를 소유하는 기타성씨의 수이다.

거주 이동하는 호주를 동성동본 성씨로 묶어서 대지의 소유 여부와 규모별로 관찰해보면 거주이동의 혈연성을 짐작할 수 있다(<표 9>). 우선, 이거의 경향을 이끈 것은 역시 그 마을에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성씨의 호주들이다. 본촌내륙의 경우는 29성씨의 41호가 그러하다. 그 외에도 대지를 소유한 호주와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도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또한 이 수치를 넘어서 존재한다. 이 가운데에는 안동권씨를 비롯하여 본촌내륙에 다수의 대지를 소유한 성씨의 호주들도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빈번한 이거에 노출되어 있다.

안동권씨는 17호가 이거했는데, 그 가운데 대지 무소유인 경우가 11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성촌락의 주도적 성씨라 하더라도 동일성씨 내부의 계층적 격차가 심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밀양박씨(8호)나 김해김씨(10호)는 마을에 소규모의 대지를 소유하는 성씨이지만 동일성씨 내에 대지

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수의 이거호를 배출하고 있다. 동일성씨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면서도 안정적 거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은 본촌내륙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한편, 대지를 소유하면서도 이거하는 성씨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본촌내륙의 경우를 보면, 마을의 대성으로 대지를 소유하는 안동권씨와 순천박씨가 각각 6호, 5호 이거하고 있다. 1910년대 성씨별 대지소유 현황과 비교해보아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천박씨는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는 호의 이거가 눈에 띈다. 순천박씨 이외에 200평 이상의 대지를 소유하던 자가 이거하는 또 하나의 성씨별 특징은 동일성씨의 친족이 그다지 거주하지 않는 군소 성씨에서 이거하는 현상이다. 1910년대에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던 삭녕최씨, 나주임씨만이 아니라 동래정씨(2호), 성산이씨(2호), 해주정씨(3호), 전주이씨(1호), 연일정씨(1호)가 200평 이상의 대지소유자로 이거했다. 이 가운데 특히 동래정씨와 연일정씨는 1910년대에 대지를 소유하지 않았던 호들이다. 이후에 대규모로 대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머지않아 타지로 이거한 것이다. 앞의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안동권씨나 순천박씨와 혼인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200평 이하의 대지를 소유한 성씨로 이거한 경우를 보면, 1910년대에 대지를 소유했던 성씨만이 아니라 이후에 소유하게 된 성씨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밀양박씨는 1910년대에 7필지의 대지를 소유했으나 5호의 대지 소유호가 이거했다. 위에서 밀양박씨로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수의 이거호를 확인한 바 있는데, 다수의 동성친척이 함께 거주하며 대지도 다수 소유했지만 결국 대거 이거하고마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밀양박씨나 김해김씨등과 달리, 1910년대에 대지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후 중소규모의 대지를 소유하게 된 의성김씨(1호), 김녕김씨(1호), 함양오씨(1호), 김해배씨(1호)도 발견되는데, 곧 이거하게 되었다. 새로운 성씨가 대지를 소유하면서도 군소 성씨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높은 비중이라 할 수는 없지만 대성 가운데에서도 이거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기타 군소 성씨의 대지 소유호가 이거하고 마는 현상은 모든 마을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본촌내륙의 밀양박씨나 김해김씨와 같이 대지 무소유 호를 포함하여 다수호를 이루면서 대거 이거하는 성씨나, 한두 호가 새롭게 대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가 이거하는 성씨는 다른 마을에서는 흔하지 않다. 본촌내륙에는 이거하는 성씨에서만이 아니라 대지 소유에도 변동이 심했다. 단계리

를 거점으로 출입 빈도가 높았던 것은 본촌내륙이 가지고 있는 유명 '세거지'로서의 지역적 특성에 의거한다. 이래이거의 중심점이 된 이유도 이러한 지역적 권위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이에 비해 두곡은 이거비가 낮을 뿐 아니라 대성인 안동권씨로 대지를 소유하면서 이거하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안동권씨가 1910년대 두곡에 소유한 대지는 27필지인 데에 비해, 이후 대지 소유자로 이거한 호는 4호에 지나지 않는다.

'두곡'과 같이 하나의 마을 범위에서 형성되는 동성촌락이든 '단계'와 같이 몇 개 마을의 광범위한 동성촌락이든 거주와 이동에 있어 계층적 및 혈연적 성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후자에서 비교적 거주의 유동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두곡은 안동권씨 가운데에서도 동계공파가 모여서 안정적으로 거주했다. 마을 입구에 일찍부터 동계공 권도의 '완계서원'을 건립해두어 계파 후손들이 부계남성 중심의 혈연적 고유성을 가지고 집거하는 정당성을 고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계혈연집단에 형성되는 질서와 조직화가 주민의 사회활동에 대한 마을단위의 조직적 운영을 주도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다. 단지 동계공파의 종손은 애초의 출신지를 떠나지 않고 단계본촌에 계속 거주했다. 두곡을 실질적인 '集姓村'으로 구성하면서 단계가 가지고 있는 '世居地'로서의 권위, 즉 정통의 '班村'이라는 인식을 포기하지는 못한 듯하다.

'동성촌락'은 한두 성씨집단이 마을의 주도적 세력으로 상정되지만, 이상에서 드러난 현상은 그것과 다소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마을의 대성으로 거론되는 성씨로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거에 노출된 가족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 반대로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면서도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한 점이 그러하다. 대성을 이루는 성씨집단 내의 가족들은 경제적 위상의 격차가 심하며,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갖추어도 정착하지 못하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동일성씨 내부의 거주 유동성이 역으로 혈연적 유대의 강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마을에 동성동본 성씨의 가족이 한둘밖에 없어 대성은 아니지만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던 자들이 이거하는 경우였다. 대성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든지 마을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마을에 정착하기 어려운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대성 성씨들이 부계혈연집단의 결집을 강조하면서 발현하는 배타성이 그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Ⅳ. 맺음말

식민지호적은 1910년대를 통해 조선인 인구파악을 강화한 식민지 당국의 성과였다. 호구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현존하는 가족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재편하던 조선시대 호적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토지조사로 실시된 대지의 地番을 고정된 주소로 삼아 모든 인구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나아가 식민지호적에서는 거주이동과 관계없이 본적지주의 호적을 성립시켜 연장자 남성을 가장으로 하는 소위 ‘근대적 가부장제’를 적용하려 했다. 개개인의 ‘出身’을 본적지라는 지리적 연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혈연적 연원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호적 정책은 19세기에 진행되어오던 대가족화 경향와 친족네트워크의 유대 강화, ‘동성촌락’이라는 혈연적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일련의 변화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성촌락이란 한두 개의 성씨가 집단화하여 마을의 주도세력으로 존재하는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의 동성촌락의 실체는 그러한 강고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1910년대 토지대장에서 동성촌락이라 불리는 마을의 대지 소유관계를 성씨별로 분석하면 마을의 주도적 성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착의 안정성을 잃고 시행하는 빈번한 거주이동이 지역공동체의 유동성을 확인시킬 뿐이었다.

주민의 거주이동을 추동하는 가족들은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군소 성씨들이다.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거주이동에 노출된 부류들이 거주이동의 중심에 있다. 사회경제적 기반의 유무가 거주이동의 일차적인 원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성촌락을 주도하는 대성 성씨의 친족 가운데에도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거주를 이동하는 가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계층성을 넘어서는 부계혈연적인 연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타성에 대한 부계친족조직의 배타성이 발현되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첫째로 대성 성씨로서 대지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이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단계는 안동권씨와 순천박씨의 세거지로 이들의 사회적 위상, 전통적 계층성을 대변하는 지역이다. 거주이동을 하더라도 친족네트워크의 중심점에 근거를 남겨두고자 하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로, 그것과 달리, 대성은 아니지만 큰 규모의 대지를 소유하던 성씨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비율로

거주이동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거주의 경제적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그것과 다른 이유로 이거하는 쪽을 택한 가족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성 성씨와 혼인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대성 성씨들에 의해 부계혈연 결집의 강조와 함께 발현되는 배타성이 그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들은 이래이거를 거듭하거나 종국에는 모든 경제적 기반을 처분하고 떠나는 경향이 있다.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이러한 실체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에 있는 것일까? 혼인으로 인한 개별적인 인구이동이나 가족단위의 이주나 동일성씨의 가족들이 세거지를 기점으로 하는 이래이거는 세거지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빈번한 현상이었다. 빈번한 거주이동 때문에 사회적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 세거지로부터 연원을 갖는 부계혈연적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20세기 전반의 동성촌락이 존재한다.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실체와 혈연적 유대관계의 강화 경향을 볼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혈연적' 집단이나 '지역공동체'의 실체는 중국의 宗族이나 일본의 무라(村)와 비교해 그리 견고하지 않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들어 양자 모두의 결집 강화가 강조되고 일부 실현되기도 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유동성은 20세기의 사회변동에 따라 심화되었을 것이며, 그에 대한 반작용이 지역을 넘어서는 친족네트워크의 연대 강화와 종족집단의 구상을 부추겼다고 여겨진다.

투고일: 2020.10.29　　심사일: 2020.12.07　　게재확정일: 2020.12.17

참고문헌

「산청군 신등면 제적부」, 산청군 신등면사무소.
「慶尙道 山淸郡 新等面 丹溪里 토지대장」, 산청군청
「丹城郡新等面丹溪里原圖」(1914년11월15일 측도완성), 국가기록원
「慶尙南道丹城郡面洞疆界略圖」, 1914년 1월 臨時土地調査局 작성, 국가기록원
『安東權氏派譜(東溪公派)』(1934년 편찬), 국립중앙도서관
『順天朴氏判尹公派譜』, 1994년 간행
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조선총독부, 1933
『朝鮮五萬分一地形圖』, 조선총독부, 1918

권내현,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김건태,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세량의 관계」, 『韓國史論』 65,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2019
_____, 「광무양전의 토지파악 방식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4, 대동문화연구원, 2013
_____,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대동문화연구원, 2009
_____,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박이택,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집성촌의 추이와 인구동학」, 『대동문화연구』 102, 동문화연구원, 2018
_____, 「20세기 언양지역의 가족구성의 변천-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대동문화연구』 83, 대동문화연구원, 2013
박희진, 「日帝下 彦陽地域 寄留家口의 分居-居住登錄簿의 分析」, 『古文書研究』 34, 한국고문서학회, 2009
박희진·백승민, 「식민지기 언양지역 延安宋氏 가계의 토지상속」, 『대동문화연구』 9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백승민, 「日帝時代 在村中小地主家의 土地相續-丹溪里 安東權氏 및 順天朴氏의 사례분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8
손병규, 「조선후기 거주이동과 혈연적 연대의 관계-단성지역 합천이씨 가계들의 호적과 족보 분석을 통해」, 『韓國史學報』 79, 고려사학회, 2020
_____, 「戶籍과 族譜의 자료적 특성과 연구방법-17C~20C 초 丹城地域 培養洞 陜川李氏들을 추적하며」, 『大東文化研究』 102, 2018

_____, 「20세기 초 한국의 族譜 편찬과 '同族集團' 구상-경상도 丹城地域 安東權氏 몇 가계의 사례」, 『大東文化硏究』 91, 대동문화연구원, 2015
_____, 「식민지시대의 호구조사와 민의 대응, 그 전통성의 관점에서」, 『사림』 40, 수선사학회, 2011
_____, 「식민지시대 除籍簿의 인구정보-경상도 산청군 신등면 제적부의 자료적 성격」, 『사림』 30, 수선사학회, 2008
_____, 「민적법의 '호' 규정과 변화-日本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대동문화연구』 57, 대동문화연구원, 2007
_____, 「한말 · 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대동문화연구원, 2006
송양섭,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한국역사연구회, 2019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 검토-戶의 移居와 혈연결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_____,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在村兩班地主家의 농업경영-경상도 단성 金麟燮家의 家作地경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2, 대동문화연구원, 2008
_____,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在村兩班地主家의 농업경영(2)-경상도 단성 金麟燮家의 幷作地경영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67, 경남사학회, 2008
崔允榛, 「1930년대 朝鮮의 同族部落과 同族集團; 丹城地域 同族部落의 形成過程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鄕村社會의 단면」, 『전라문화논총』 5,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2

The Residence Migration of Rural Famil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lass and Blood Relation

Son, Byung-giu

The colonial-era household register address system in the 1910s was changed from the order of households to the lot number of the building sites. Previously, only a few households and members of households were optionally identified, but they were changed to take a census of all residents living in fixed addresses. Furthermore, in the new household register format, the 'origin' of individuals was changed from the method of recording only geographical origin, called domicile of origin, to the method of additional identification of family blood ties. However, the frequent movement of residents was an obstacle to the formation of a kindred community called 'Same family-name Villages'.

Residence migrations occurred in a high rate among families who did not own land. The instability of the residence may be the cause. These were mainly minority family-names, but they also include the members of the same family-name, which accounts for a large number of residents. It can be said that the blood ties of the same family-name was not strong enough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residence.

Meanwhile, residence migration occurred even among families with large land. In other words, there existed a class that does not settle down even with socioeconomic stability. This was mainly seen among the families of the minority family-name. In the case of majority family-names, they were family members who wanted to work in the city based on the family res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believed that the migration of minority family-names were caused by exclusivity from the majority family-names in the same area.

In Same family-name Villages, the majority family-names came to be the leading force of the village as emphasizing the cohesion of the paternal kindred group. But there were

various dynamics between the social class and blood ties of the residents.

Key Words : colonial-era household register, rural family, residence migration, same family-name village, social class, blood ties